## 예 산 총 칙

## 202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926,436,937	27,793,108
일반회계		864,743,867	25,942,316
특별회계		61,693,070	1,850,792
_	기타특별회계	61,693,070	1,850,792
	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58,454,226	1,753,627
	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675,554	20,267
	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1,000,000	30,000
	공원관리특별회계	1,563,290	46,899

- 제 2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202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8,3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4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,0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5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
- 제 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  - 인건비, 직무수행경비,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  - 지방채, 원금상환과 금리변동 등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
  -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
  -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
-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제2항 규정에 의한 기구,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재,개폐로 인하여 부서 간 직무권한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.